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자율운항선박개발및상용화
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1.2. 공포)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운항해역,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2조)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에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해역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 기타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 수립·변경 시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 등

나.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3조·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보급확산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

다.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현황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방법 등을 규정, 현황조사의 대상 규정

라. 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6조)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 구성 및 민간위원 임기(2년), 운영 절차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명시

마.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고시 및 운영성과 평가(안 제7조~제8조)

해양수산부 장관이 운항해역을 고시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지정·변경·해제 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의무, 운항해역의 운영성과 평가 방법·시기 및 항목 규정

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안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실증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성능실증센터로 지정 및 예산 지원 가능, 성능실증센터의 수행 가능 업무 규정

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안 제10조)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 규정

아.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차.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카.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안 제14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대상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

타. 협회 등의 사업(안 제15조)

협회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규정

파. 운항의 승인(안 제16조)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 규제 신속확인, 권한의 위임, 업무의 지원, 과태료(안 제17조~제20조)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규제 신속확인을 요청할 때 필요한 사항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 위탁사항 및 대상 기관 규정, 업무 지원이 가능한 대상 기관 및 비용 지원 근거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협의 중

라. 기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예정

2) 행정규제 : 협의 예정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2.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경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2.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현황
3.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국내외 현황
4. 자율운항선박 관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에 따른 운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3.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4. 행정안전부 차관
5. 해양경찰청장

④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⑦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이하 “운항해역”이라 한다)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운항해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
2. 운항해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3. 운항해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운항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하는 경우, 운항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성과 평가) ① 운항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항해역 운영의 성과와 다음 연도의 운영 계획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해역 운영계획의 달성도
2. 운항해역의 운영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상용화 및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확산 등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운항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실증에 적합한 인력·장비 등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의 시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이하 “성능실증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실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 개발하는 자율운항

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실증 지원

2.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 운영

3.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지원

4.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개발과 성능실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능실증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법 제12조제10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으로서 자율운항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육성

2.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의 고도화

3.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의 운용과 연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류체계를 효율화·고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정책의 기본방향·목표 및 단계별 추진 계획

2.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1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5.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7. 법 제18조에 따라 자율운항선박관련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
8.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
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15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교육장소 임대료에 필요한 경비
5.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6.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5조(협회 등의 사업)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은 법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으로서 협회 등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운항의 승인)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여부
2. 시범운항 및 실증 상세 계획(최저승무원원 및 직무 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평가 결과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증서
5.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동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약속서
7.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운항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 및 결과
8.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운항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항의 승인 여부 및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결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의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운항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연구·시범운항하기 위하여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자료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현황조사

2.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

3.법 제1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

2.법 제1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현황조사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항해역 지정 신청의 사전검토

3.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운항해역 평가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항의 승인 신청의 사전검토

제19조(업무의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운항해역, 운항의 승인 및 규제 확인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29조 제1호	250	300	500
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 제2호	300	400	500
다. 운항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법 제29조 제2호	400	50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연 락 처	044-200-6201